

고양시 환경에너지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공청회

2022. 5. 21(토), 10:00 / 일산와이시티 연회장

순서

1부. 고양시 환경에너지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소개

2부. 2022년 주민지원협의체 사업추진계획 안내

3부. 소각장 관련 주민의견 수렴(질의 /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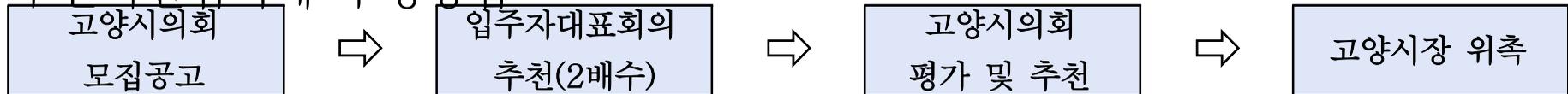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법적근거

○ 폐기물시설 촉진법 제17조의 2(지원협의체의 구성기준 및 기능 등), 동법시행령 제18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 등)

- 소각용량 일 300톤 이상 시설은 15인 이내로 구성
(시의원 2명,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 주민대표 11명)

■ 주민지원협의체 구성방법



■ 주민지원협의체 구성경과

- 2010. 4월 : 고양환경에너지시설 2세대 운전(한국환경공단)
 - 고양도시관리공사 인수 : 2013. 3. 11
- 2010. 6. 8 :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윈스턴파크, 내곡동)
- 2011. 5. 19. : 주민지원협의체 최초 구성(총15명/1~3기)
- 2017. 4. 18 :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와이시티 포함)
- 2017. 6. 20 :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구성협의(와이시티 7, 윈스턴 3, 내곡동 1)
 - 고양시의회 본회의 의결통과(2018. 1. 9일 / 4기부터 와이시티 주민대표 위촉)

주민지원협의체 기능

■ 주민지원협의체 기능

1. 제17조제2항의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선정
 -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 할 경우
 2.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에 대한 협의
 - ↳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나 인근에 체육시설 등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설치 시
 3. 제22조(주민지원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의 지원)제5항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
 4. 제25조제1항(지역주민의 감시)의 주민감시요원의 추천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편익시설의 사용료 감면에 대한 협의
 - 사후 환경상영향조사 전문연구기관 선정 협의(3년주기)
- ※ 기타 :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규칙”의거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 주민대표 추천(2명)

■ 주민감시원의 활동범위(시행령 제32조, 고양시 폐촉법 조례8조)

1. 처리대상 폐기물의 반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2. 반입된 폐기물의 적정 처리 여부에 대한 확인
3. 환경오염 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4. 주변 환경오염 실태 조사과정에 대한 확인
5. 그 밖에 폐기물의 반입·처리 등에 관하여 지원협의체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한 확인
6. 고양시 폐촉법 조례8조 반입제에 사항에 대한 확인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 주민지원기금조성의 법적근거

- 폐기물시설 촉진법 제21조, 동법시행령 제25조
 -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로 산정
-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전년도 일반용 종량제 봉투 및 재사용봉투의 총 판매비용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제작비와 판매수수료 제외)

■ 주민지원기금 출연액 현황

(단위:백만원)

년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금액	118	118	162	268	265	262	313	345	475	837	918	950

▶ 조성방법

- 2011~ 2013년 : 전년도 소각량 ×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10%
- 2014년 ~ 2019 : 전년도 일반용 종량제봉투 총 판매액에서 제작비와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비용의 **3%**
- 2020년 ~ : 전년도 일반용 종량제봉투 총 판매액에서 제작비와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비용의 **5%**

2022년 주민지원기금 사업계획

■ 주민지원기금 사업계획

○ 총괄

구분	계	일반운영비 (기금의5%이내)	주민지원사업			
			소계	소득증대사업	복리증진사업	그 밖의 사업
금액(원)	950,220,868	47,511,043	902,709,825	4,000,000	859,119,225	39,590,600

※ 조성액 : 당해연도 출연액 + 전년도 잔액 + 전년도 예치금

○ 주민지원사업 세부현황

구분	내 용	금 액(원)	비 고
소득증대사업	농작물 및 임산물 채배시설 지원사업	4,000,000	
복리증진사업	냉·난방비 지원, 금계초 통학차량 지원 환경·위생시설지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859,119,225 (90%)	• 통학차량지원 : 102,140,000원
그 밖의 사업	주민참여 반입폐기물 성장조사 주민지원협의체 역량강화(현장견학) 등	39,590.600	
합 계		902,709,825	

주민지원협의체 추진사항(1)

■ 안정적인 소각장 운영 요구

- 소각장의 잦은 고장으로 인한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해 휴풍 및 재가동 시 주민 알림서비스 요구
- 양질의 폐기물이 소각될 수 있도록 반입 폐기물 분류 선별장 설치 요구
- DMS(다이옥신 상시 포집장치) 가동상태 상시 유지, 운용 및 결과 요구
- 2019년 환경상영향조사 후속조치 요구
 - NOx의 저감을 위한 배출농도 감소시설(SCR) 설치요구
 - 소각시설 소음방지를 위한 소음방지대책 요구
- 2022년 환경상영향조사 조사기관선정 협의 추진
- 고양환경에너지시설 기술진단 및 SCR설치 타당성 조사용역 참여 요구
- 소각장 관리상태 확인을 위해 고양시의 주민지원협의체 정기회의 참석 요구
- 환경에너지시설 견학프로그램 재개 요구(2022년 5월 2주차부터 진행)

주민지원협의체 추진사항(2)

■ 주민지원기금의 현실화 요구

- 생존권을 위협받는 피해지역 주민의 주민지원기금 현실화요구(서울시 1/5정도 수준)
 - 종량제봉투 판매 수수료 ⇒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
- 환경에너지시설 운영으로 인한 에너지 판매수익금 주민지원 요구

■ 주민편익시설은 피해지역주민을 위한 시설로 주민사용 요구

- 백석체육센터는 폐축법 및 고양시 조례에 의거 주민편익시설이다.
- 이용율 재고를 위한 협의 요구(피해지역주민 이용률 : 전체회원의 10%)
- 감면율 상향조정(50% ⇒ 60%) : 2022. 5. 1일부(일일입장 포함)
- 생활체육시설 주민개방 요구(주말 오전 중)

3부. 주민간담회(질의/응답)













